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수신 언론중재위원회

(경유) 심의1팀 (dreamjyk@pac.or.kr, pac3191@pac.or.kr)

제목 성폭력 범죄에 대해 ‘몰카’, ‘음란물’ 등 순화 용어 사용하는 언론 대상
 시정권고 요청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2020년 한 해 동안 주요 일간지, 경제지, 방송사들이 1) 디지털성범죄를 ‘몰카’로 보도한 기사 1,328건, 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성착취물을 ‘음란물’로 보도한 1,434건 등 총 2,762건의 기사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심의 기준 제2장 사회적 권익 침해 제12조에 따라 시정권고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심의 기준 제 2장 사회적 권익 침해

제12조(범죄 묘사)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몰카(몰래카메라) →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앞서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기존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변경했습니다. 몰카라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제12조 ③에 해당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 **불법촬영**: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
- **유포/재유포**: 업로더, 단톡방, SNS, 포르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나 헤어진 연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하는 보복성 유포를 하는 행위 등.
-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유포협박으로 금전 요구를 하는 행위 등.
- **유통/소비**: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등.

출처: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https://moleg.tistory.com/4592> [법제처 공식 블로그]

관계 법령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촬영물 복제·유포·재유포·판매·임대·제공·소지·구입·저장·시청 모두 범죄에 해당됩니다. 언론은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범죄의 재생산에 일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해악을 축소시키는 용어 ‘몰카’ 사용을 즉각 멈추도록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5.19.] [법률 제17264호, 2020.5.19., 일부개정] |
|--|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12.18., 2020.5.19.> |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12.18., 2020.5.19.> |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8.12.18., 2020.5.19.>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5.19.> |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5.19.> |

2.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지난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용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됐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음란물’ 표현은 피해자를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간주하기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쉽고, 디지털 성범죄를 과소평가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률 용어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물’ 용어 사용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제12조 ③에 해당하므로 해당 언론사에 시정 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6.2.] [법률 제17338호, 2020.6.2., 일부개정] | |
|---|--|
|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개정 2020.6.2.>)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 |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 |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 |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 |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 |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6.2.> | |

3. 시정 권고 대상 언론사 및 기사 개수

분석방법 :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 활용 (<https://www.bigkinds.or.kr>)

검색어 : 몰카 -웃음 제외 (※연예/문화면 제외한 정치/사회 세션에서만 검색)

음란물 +아동 결합

분석기간: ‘몰카’ 2020. 1. 1 ~ 2020. 12. 31

‘음란물’ 2020. 6. 2 ~ 2020. 12. 31 (법률 용어 개정 이후로 설정)

| 언론사명 (가나다순) | 잘못된 용어 사용 기사 갯수 | | | 언론사명 (가나다순) | 잘못된 용어 사용 기사 갯수 | | |
|----------------|-----------------|-------|-----|----------------|-----------------|-------------|-------------|
| | ‘몰카’ | ‘음란물’ | 합계 | | ‘몰카’ | ‘음란물’ | 합계 |
| 경향신문 | 22 | 65 | 87 | 조선일보 | 112 | 80 | 192 |
| 국민일보 | 85 | 97 | 182 | 중앙일보 | 98 | 81 | 179 |
| 내일신문 | 5 | 14 | 19 | 파이낸셜뉴스 | 7 | 7 | 14 |
| 동아일보 | 25 | 33 | 58 | 한겨레 | 6 | 37 | 43 |
| 매일경제 | 112 | 68 | 180 | 한국일보 | 34 | 51 | 85 |
| 머니투데이 | 94 | 74 | 168 | 한국경제 | 105 | 68 | 173 |
| 문화일보 | 25 | 16 | 41 | 헤럴드경제 | 31 | 57 | 88 |
| 서울경제 | 59 | 71 | 130 | KBS | 15 | 20 | 35 |
| 서울신문 | 66 | 94 | 160 | MBC | 8 | 10 | 18 |
| 세계일보 | 130 | 149 | 279 | OBS | 6 | 6 | 12 |
| 아시아경제 | 61 | 68 | 129 | SBS | 7 | 4 | 11 |
| 아주경제 | 48 | 43 | 91 | YTN | 47 | 68 | 115 |
| 연합뉴스 | 120 | 153 | 273 | 합계 | 1328 | 1434 | 2762 |

정치하는엄마들



담당자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시행 하마들_044 (2021. 2. 5.) 총 4매

홈페이지 www.politicalmamas.kr

이메일 act@politicalmamas.kr